

대통령의

○ 헌법상 전처리의 비상권치 권은 유신 때의 긴급조치라  
는 다른

- 긴급조치는 천재. 지변의 경우를 뿐 아니라

"공공의 질서유지가 중대한 위해를 받거나 받을  
우려가 있을 때"로 반출 가능하여. 재차적  
작용의 우려 있다

비상권치는 또 천재. 지변으로 국외의 안전을  
유지할 수 있는 이상에서. 이에 준하는 중대한  
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반출 가능.

※ 천재. 지변에서. 재차 반출된 사례 없음.

비상권치는

- √ 국회의 사무통제 가능

· 즉시 국회 통지 승인 있어야 하는 승인 및 권한  
면 존속상실

· 해제 후 다시 즉시 재제

-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.

○ 비상정치를 긴급정치라 할 것임은 원래는  
~~정당 있음~~ 그러나 이는 순수히 호사외기에  
이에 대처할 수 있을 권한은 대통령에게  
권한으로 위국의 입법제에 있을 호사  
긴급헌의 일종임.

○ 그러나, 비상정치를 유선외의 긴급정치라 할  
한 것으로 보는 인식 양태가 있을 뿐 아니라,  
유선 잔사의 하나인 가치 생각하는 개념의  
있음. (전통에 대해서도 제정제도가 있음)

○ 6.29 선언에 따라 대통령 권한은 국헌과  
국권 및 헌법 기타는 위배하지. 이를 상계  
하는 긴급명령. 긴급명령 제26. 긴급명령 제27. 헌법  
상계권 및 기타  
으로 내세우지 않.

○ ~~국헌을 위배하는 명령은 내세우지 않~~